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09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고동진 · 강승규 · 송석준
김형동 · 성일중 · 김예지
안상훈 · 박충권 · 최수진
김성원 · 서일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

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5(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제622조제1항 중 “그 任務에”를 “회사를 위한 그 임무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第622條(發起人，理事 其他의 任員等의 特別背任罪) ①會社の 發起人，業務執行社員，이사，집행임원，監査委員會 委員，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第407條第1項，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行者，支配人 其他 會社營業에 關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會社에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 以下の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82조의5(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 第622條(發起人，理事 其他의 任員等의 特別背任罪) ① ----- ----- ----- ----- ----- ----- ----- ----- -----회사를 위한 그 임무에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